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기 등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5. 2. 17.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2에 제11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14(핵심장치등)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핵심장치등은 별표 30의9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30의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핵심장치등(구동축전지) 기준(제112조의14 관련)

1. 영 제8조의6제1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제18조의3의 기준을 따른다.
2. 영 제8조의6제2호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이륜자동차(수소연료전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의 경우 제69조의4의 기준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12조의14(핵심장치등) 자동차</u> <u>및 이륜자동차의 핵심장치등은</u> <u>별표 30의9의 기준에 적합하여</u> <u>야 한다.</u>